

- 이 통지표는 잘 보관하십시오.
- 2013 년 7 월 8 일부터 외국인주민 여러분에 대해서도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의 운용이 시작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, 외국인주민 여러분의 주민표에 주민표코드가 기재됩니다.
-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은 거주관계를 공증하는 주민기본대장을 네트워크화한 전국공통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.
- 주민표코드는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에 있어서 전국공통으로 본인확인을 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임의의 11 자리 번호입니다.
- 일부 행정수속에 있어서 주민표코드를 신청서에 기재하는 것으로, 주민표사본의 첨부를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. 구체적인 수속은 각 창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해서는 보유정보·이용의 제한, 내부의 부정이용 방지, 외부로부터의 침입방지 등 보안 확보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- 주민표코드는 주민 여러분의 청구에 의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.
- 주민기본대장법에 있어서는 민간의 기관이 주민표코드의 통지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
- 주민기본대장법에 있어서는 주민표코드의 민간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